

2026년 의회사무과 종합감사 결과 보고

감사법무담당관

목 차

I. 감사개요	1
II. 감사대상기관 현황	2
III. 감사결과	2
□ 총 평	2
□ 처분지시사항 일람표	3
□ 지적사항 처분검토	3
IV. 지적사항	4
V. 우수사례	7
□ 생성형AI 도입 및 자체교육을 통한 의정지원 역량 강화.....	7

2026년 의회사무과 종합감사 결과 보고

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 [감사법무담당관-602(2026.01.15.)호] 에 따라 실시한 의회사무과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

I 감 사 개 요

- ☐ 감사기간: 2026. 5. 18. ~ 5. 22. [5일]
- ☐ 감사범위: 2024. 5. ~ 2026. 4. [2년]
- ☐ 감 사 반: 감사담당 외 3인
- ☐ 감사중점사항
 - 청사 및 시설, 물품·장비 관리 실태
 - 비밀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
 - 계약 추진 및 예산 집행 적정 여부
 - 계좌 및 신용카드 관리 실태
 - 복무에 관한 사항
 -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
 - 출장여비 관련 사항
 - 청렴 관련 비공무원(기간제근로자) 채용 및 관리 실태
 - 의회 운영에 관한 기록 및 대장 등에 관한 사항

Ⅱ 감사대상기관 현황

□ 기관현황[2026. 5.기준]

의회사무과장	
전문위원	
현 원	2명
의정	
현 원	11명
의사기록	
현 원	4명

□ 정·현원 현황

(단위:명)

직 급 별	정 원	현 원	과 부 족	비 고
계	17	17		
5 급	2	2		
6 급	5	7	2	
7 급	6	6		
8 급	3	2	△1	
9 급	1	0	△1	
기 타				시간선택제 1 공무직 1 기간제 1

Ⅲ 감 사 결 과

□ 총 평

- 이번 종합감사는 2024. 5. ~ 2026. 4. 강화군 의회사무과의 주요 예산 집행 및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, 업무 처리의 적법성·타당성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음
- 감사 결과, 총 6건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어 시정 4건, 주의 2건, 재정상 조치 1건(**천원)을 요구하게 되었음

-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신속히 보완·시정하고,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업무 연찬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□ 감사 지적 사항 총괄

처분 요구(건)			재정상 조치(건/천원)			신분상 조치(건/명)		
계	시정	주의	계	환수	환급	계	훈계	주의
6	4	2	1/***	1/***	-	-	-	-

□ 처분지시사항 일람표

연번	제 목	처분내역			비고
		행정상	신분상	재정상(원)	
1	회계관리 업무 처리 소홀	시정			
2	선금보증 업무 부적정	주의			
3	공무원 복무관리 소홀	시정			
4	공무원 사무인계인수 소홀	주의			
5	물품 자산관리 업무 소홀	시정			
6	준공검사 업무 소홀	시정		(환수) ***,***	

□ 지적사항 처분검토

[처분요구사항] 시정요구 4건, 주의요구 2건

- 의회사무과 종합감사 결과 총 6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으며, 업무상 4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, 2건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주의를 촉구하고자 함

[재정상 조치] 1건(**천원)

- 환수 1건(**천원)

IV 지 적 사 항

1. 회계관리 업무처리 소홀

위법 부당 내용	1.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업무 소홀 ○ 관련법령: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, 「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, 「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 ○ 의회사무과에서는 재무관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,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부재자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2. 격려품 지급에 대한 사항 ○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」 ○ 의회사무과에서는 명절에 격려물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지급 관리대장 목록은 작성하였으나, 지급일시를 미작성하였고, 담당자 및 상급자의 결재가 누락되는 등 지급관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,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의 경우, 지급대상자 관련 증빙 없이 지출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 3. 장기근속·퇴직(예정)자 집행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○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21조(집행내역의 공개) ○ 의회사무과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처분 요구	○ 시정 ⇒ 장기근속·퇴직(예정)자 집행내역 공개

2. 선금보증 업무 부적정

위법 부당 내용	○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(대가의 지급), 「지방회계법」 제35조(선금급과 개산급)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1장 제2절(선금 및 대가 지급)
----------------	---

	○ 의회사무과에서는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선금 지급 시 계약 이행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선금보증서를 수령하여야 하나, 선금보증서가 아닌 계약보증서를 첨부한 상태에서 별도의 검토·보완 없이 선금을 지급하는 등 선금 보증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
처분 요구	○ 주의 ⇒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

3. 공무원 복무관리 소홀

위법 부당 내용	1. 유연근무자 출·퇴근 시간 미준수 ○ 관련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(근무시간 등), 동 규정 제3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조의2(근무기강의 확립) ○ 의회사무과에서는 차세대 인사관리 시스템에 출·퇴근 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, 출·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자체 복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. 가족돌봄휴가 사용·관리 부적정 ○ 관련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 ○ 의회사무과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3. 육아시간 사용·관리 부적정 ○ 관련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 ○ 의회사무과에서는 [붙임3] 현황과 같이 연가 등의 사유로 日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
처분 요구	○ 시정 ⇒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첨부, 일(日) 최소 근무 미달 육아시간 사용분 연가전환 또는 환수 등 규정에 따른 조치

4. 사무인계인수 소홀

위법 부당 내용	○ 관련법령: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1조(업무의 인계·인수), 동법 시행규칙 제45조(업무의 인계·인수), 「강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」 제3조(사무의 인계인수) 및 제4조(인계인수서의 작성) ○ 의회사무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계·인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감사일 까지 인계·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실이 있음
처분 요구	○ 주의 ⇒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

5. 물품 자산관리 소홀

위법 부당 내용	○ 관련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57조(물품의 관리), 제66조(물품 관리사무의 전산화), 「강화군 물품관리 조례」 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○ 의회사무과에서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 3건에 대하여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처분 요구	○ 시정 ⇒ 미등록 자산 등록

6. 준공검사 업무 소홀

위법 부당 내용	○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검사), 제18조(대가의 지급)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6조(건설공사의 환경관리), 동법 시행규칙 제61조(환경관리비의 산출 등) ○ 의회사무과에서는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시 준공서류의 증빙자료와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였어야 하나, 준공대가 지급 시 ***,***원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
처분 요구	○ 시정 ⇒ 정산 소홀에 따른 준공금 ***,***원 환수

생성형 AI 선제 도입 및 자체교육을 통한 의정지원 역량 강화

- ❖ 생성형 AI(ChatGPT)를 군의정에 도입하고 선제적인 자체교육을 추진하여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AI 활용문화 확산 및 군민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

□ 추진배경

- 생성형 AI(ChatGPT 등)의 활용이 행정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 필요성 증가
- 의정지원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 향상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 대응을 위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의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
-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·보안 등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필요

□ 추진개요

- 사 업 명 : 생성형 AI 활용 기반 구축 및 자체교육 추진
- 추진기간 : 2025년 10월 ~ 계속 (교육일자: 2026. 2. 2.)
- 대 상 : 강화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
- 추진내용
 - 생성형 AI(ChatGPT) 운용·보급 계획 수립 및 단계적 확대 추진
 - 의정자료 및 정책자료 작성 등 의정지원 업무 분야 생성형 AI 활용
 - 강화군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선제적 AI 활용 자체교육 실시
 -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AI 활용기준 마련을 위한 보안교육 병행
 - 실제 의정활동 활용사례 및 교육 추진을 통한 AI 활용문화 확산

□ 추진성과

- 생성형 AI를 군의정에 접목하고 선제적인 자체교육을 추진하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역량 및 의회사무과 직원의 실무 역량 강화
- 강화군의회가 선도적으로 생성형 AI 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강화군 행정 전반의 AI 활용문화 확산과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 대응에 기여
- 생성형 AI 활용 교육 및 실제 의정활동 활용사례를 통해 군민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,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AI 활용문화 확산에 기여

□ 관련사진

